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679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2022. 11. 28. 이 법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71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22. 11. 23. “C, D지구 전원마을정비조합,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586,927원 및 그중 551,001,800원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433,585,127원에 대하여 D지구 전원마을정비조합은 202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C, E, F는 2022. 4. 19.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나21438).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2다310283), 위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와 C의 증여계약

C은 2022. 11. 28.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광양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은 1984년 결혼하였다. C은 정년퇴직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목록 기재 주택을 지은 다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서류준비의 번거로움, 비용문제로 C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는 2020. 12.경부터 암치료를 위해 서울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고, C은 피고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회복의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 830조 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C 책임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C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전라남도 광양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1.27㎡

2층 36.5㎡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

2. [토지] 전라남도 광양시 대 396.3㎡

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

